



최저임금 인상 걱정 뚝! 부담 뚝!

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.

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

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- ✓ '18년 최저임금 인상(시급 7,530원)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 사업주 (사업주 요건)

✓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
- 다만,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
공동주택(아파트) 경비, 청소원 (30인 요건 미 적용,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)

✓ 지원 제외 사업주

- 고소득 사업주(과세 소득 5억 초과)
-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국가 또는 공공기관,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
-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(어린이집 등)
-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

지원대상 근로자 (근로자 요건)

✓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

- (상용근로자)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,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,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,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(일용근로자)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,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, 일당 87,000원 미만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
✓ 지원 제외 근로자

- 사업주의 배우자 • 사업주의 직계 존·비속 •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

고용보험 의무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도 지원

예) 합법 외국인 근로자,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·림·어업 근로자 등

문의·상담 : ☎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

고용노동부



근로복지공단

지원금액 산정

주 40시간 이상,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	•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 ※ 최저임금 인상분 12만 원 + 노무비용 지원 등 1만 원
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	• 30 ~ 40시간 : 12만 원 • 10 ~ 19시간 : 6만 원 • 20 ~ 29시간 : 9만 원 • 10시간 미만 : 3만원
일용근로자 - 월 근로일수 기준	• 22일 이상 : 13만 원 • 15 ~ 21일 : 12만 원 • 19 ~ 21일 : 12만 원



지급결정 및 지원금 지급

- ✓ 직접 '현금 지급' 또는 '사회보험료 대납'
 - (현금 지급)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※ 매월 10일, 20일, 30일 등 입금일자 선택 가능
 - (대납) 지원금 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
 -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
- ✓ 공동주택 경비원, 미화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

신청은 용역업체! 지원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

신청서식

1. 고용보험적용사업장

-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
 - :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+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+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+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제출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
 - :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+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+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제출
 - ↳ 단, 건설업·발목업의 경우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사업자용 별도 신청서 제출
- 일용근로자 :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
 - +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+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
 - ※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는 최초 신청시 한번만 작성제출하면 됨

2.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·근로자

- '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' +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+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 서류 제출 * 5인 미만 농림·어업, 외국인, 초단시간 근로자 등

3. 첨부서류

- (고용보험 적용대상)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* (임금대장, 무통장입금증, 급여통장사본 등)
- (고용보험 적용제외)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 서류,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,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

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

- 신청자 :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
 - 사무대행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무대행기관과 계약체결 후 신청서 등 위탁
- 신청 시기 : 연1회(소급신청 가능)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(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)
- 신청 접수 기관 : 사회보험 3공단(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)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
- ▶ 온라인 신청
 -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

온라인 신청사이트

명칭	사이트 주소	운영기관	홈페이지 문의
근로복지공단EDI (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)	http://total.kcomwel.or.kr	근로복지공단	1833-6000
국민건강보험EDI	http://edi.nhis.or.kr	국민건강보험공단	1577-1000
국민연금EDI	http://edi.nps.or.kr	국민연금공단	063-713-6565
고용보험EDI	https://www.ei.go.kr	한국고용정보원	1577-7114
4대보험정보연계센터	http://www.4insure.or.kr	국민연금공단	063-711-7800

- ▶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,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
 -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(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)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로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신청

문의·상담 : ☎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